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 사 경 위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2. 12(목) 평창군수(도시주택과장)

나. 회부일자 : 2014. 3. 6(목)

다. 상정일자 : 2014. 3. 6(목) 제19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가. 제안이유

- 주택법 개정으로 인하여 사업승인대상 건축물 일부가 건축법 적용을 받도록 변경되어 건축법에 의한 허가대상건축물과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연결조문과 용어 정비로 주민들에게 정확한 내용 전달을 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용어 정비, 오탈자 정정 및 띄어쓰기 등으로 조례 정비
-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적용범위)
  - 건축법에 따라 사용검사된 15세대 이상의 분양주택도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 공동주택과 관련된 법령의 신설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의무적으로

개·보수 하여야 하는 시설과,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경관개선사업에 대하여는 10년 경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5조(지원대상)

- 주거용 건축물의 공유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
- 공동주택 발코니 화분 설치 및 옥상 조명 설치등의 공동주택 경관 개선사업에 대하여는 비용은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3항 신설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홍금숙)

- 본 조례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로 지원대상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주택”으로 하였으나

“건축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15세대이상”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주택의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적 개·보수사업』과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에 대하여는 10년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과

단지내 도로 등 보수사업 등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경관개선사업중 『발코니 화분설치』 및 『옥상 조명시설』에 한하여는 필요경비의 80퍼센트 이내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명문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를 20세대 이상에서 15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관내 39단지 668세대가 추가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혜택 확대를 위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동계올림픽 유치 도시로서 경관개선사업 투자는 바람직하고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하겠으나 우리군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수정의결 내역》

현 행	수 정 안
제5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발코니 화분설치 및 옥상 조명 시설에 한하여 공동주택 경관개선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80퍼센트 이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③ ----- ----- ----- -----50----- -----

#### 7. 소수의견 요지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건의사항 : 없 음
- 기타 특별한 사항 : 없 음

**【붙임】**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을 “조례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규정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다. 그 밖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3조로 한다.

제3조(중전의 제4조) 중 “관할구역내에 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관할 구역 내의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으로, “사용검사를 득하여 건립된 20세대”를 “건축허가를 득한 후 사용검사를 받은 15세대”로, “한한다”를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동주택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적 개·보수사업과 제5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에 대하여는 10년 경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중전의 제3조) 중 “지원을 위하여”를 “지원에”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단지내”를 “단지 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주거용 건물외 공동시설”을 “공유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발코니 화분 설치 및 옥상 조명시설 에 한 하여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한 때”를 “사용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중지한 때”를 “중지한 경우”로 한다.

제9조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적정성 여부”를 “적정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하여 11인”을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기타 위원회”를 “그 밖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제13조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갖고있”을 “갖고 있”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인정하는 때”를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를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로,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허위보고”를 “거짓보고”로, “차기”를 “다음번”으로 한다.

제16조 중 “기타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 및 「평창군 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